#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26-134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26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범위를 기존 임산부 및 배우자에서 다문화 가정 및 출산가정의 공동양육자인 (마포구에 주소지를 둔) 양가 부모까지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확대(안 제2조)

-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임산부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 (명문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)
-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(양가 부모)를 지원대상에 포함 (양가 부모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공동양육자로 인정하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출산가정의 백일해 확산 예방)

나. 지원내용 및 절차(안 제 3조)

- 임산부의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 지원
- 배우자 및 양가부모는 최근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 지원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10. 15.~2026. 11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임신부 및 배우자”를 “임신부 또는 분만 후 30일 이내의 산모(이하 “임산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, 제1호에 해당되는 임산부

3. 임산부의 배우자 및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

제3조제2항 중 “예방접종”을 “임산부의 예방접종”으로,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1회 지원하며, 그 밖의 지원대상자에게는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2조(지원대상) 백일해 예방접종(이하 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| 제2조(지원대상)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. |
| 1.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| 1. ---------- 임신부 또는 분만 후 30일 이내의 산모(이하 “임산부”라 한다) |
| 2. 제1호의 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및 배우자 | 2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, 제1호에 해당되는 임산부 |
| <신 설> | 3. 임산부의 배우자 및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|
| 3. (생 략) |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|
| 제3조(지원내용 및 절차) ① (생략) | 제3조(지원내용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. | ② 임산부의 예방접종--- 1회 지원하며, 그 밖의 지원대상자에게는 10년 이내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1회 ---.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조례안 제2조(지원대상)

나. 조례안 제3조(지원내용 및 절차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 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안 제2조(지원대상) 대상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 4. 작성자

| 작성자 이름 | 보건소 건강증진과 오은혜 |
|---|---|
| 연 락 처 | 02-3153-9094 |